

서울특별시영등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6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6. 2. 3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정부 및 국회에서 수요자중심의 법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2005년 1월 1일부터 한글맞춤법에 맞추어 법령제명 띄어쓰기 및 낫표(「」)사용을 함에 따라,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정부방침에 적극 부응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□ 한글맞춤법에 의한 제명 등 띄어쓰기 및 낫표(「」) 사용

○ 제명 띄어쓰기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⇒ 서울특별시 영등포구
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

○ 자치법규의 본문에서 다른 법령이나 자치법규를 인용하는 경우 낫표(「」)를 사용
- 제3조제2항 및 제7조 중 “지방자치법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”으로 한다.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및 근거

- 한글맞춤법에 의한 법령제명 띄어쓰기 시행기준(법제처 기획예산담당관실-639)
- 자치법규 제명 띄어쓰기 시행 안내(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-186, 2005.01.24)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합의사항 : 합의사항 없음

라. 입법예고 : 생략

마. 사 유 : 행정내부의 사무처리 절차를 정하는 규칙으로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행정내부 사무처리에 대한 변경임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3조제2항 및 제7조 중 “지방자치법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 (조례) ①(생략)</p> <p>② <u>지방자치법</u> 제19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는 구의회 의결을 얻은 뜻 및 동법 제19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, 구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명기하여야 한다.</p>	<p>제3조 (조례) 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「<u>지방자치법</u>」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제7조 (공포방법) 자치법규의 공포는 구보에의 게재로써 한다. 다만, <u>지방자치법</u>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구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.</p>	<p>제7조 (공포방법) ----- ----- 「<u>지방자치법</u>」 ----- ----- ----- -----</p>